

선 람	기 관 의 장

제942호 2016. 11. 1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55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공고 제761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2
- 삼척시 공고 제762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47
- 삼척시 공고 제77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5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6 - 14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 11. 1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68 외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1.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77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68	20161111	건물신축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27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757	2016111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형 지물(당골) 복합 활용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구분	주소	구분	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77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6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77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568	20161111	건물신축	20090710	도로명 부여사유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27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757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27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757	20161111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총계		총계						

삼척시 공고 제2016 - 755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삼척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사용점의 판매점을 통한 상품권 대금 청구시 즉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2. 주요내용

- 판매점의 정의를 변경(안 제2조 제1호)
 - “삼척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을 ⇒ “삼척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으로
- 사용점의 관리 조항 신설(안 제7조 제1항~5항)

- 사용점의 신청·철회, 지정에 관한 사항
- 거래대금 지급방법의 변경(안 제9조)
 - 지급대상자 : 시장 ⇒ 판매점
- 인센티브 일부조항 변경(안 제10조)
 - 상품권 구매자 : 경품권 지급 ⇒ 포인트 적립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의견
- 라. 이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열린시정-시정홍보-입법/공고/고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570-3359 ■ 팩스 : 033-570-3140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 중 “삼척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을 “삼척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판매점을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용점의 관리)

- ① 시장은 삼척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2항의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사용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 등 사용점으로 지정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사용점에 상품권 사용점을 알리는 표식을 지급 할 수 있다.
- ④ 사용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 한다.
- ⑤ 사용점 철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 또는 구두,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 중 “시장”을 “판매점”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와 제2호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점 및 법인 구매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상품권 판매점 또는 사용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5.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행·유통된 상품권은 최종 청구가 완료될 때까지 시장이 직접 지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1. “판매점”이라 함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삼척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기관 및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1. _____ 삼척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_____.</p>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생략) ②시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판매점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p>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상품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사용점의 관리) ①시장은 삼척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2항의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사용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 등 사용점으로 지정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용점에 상품권 사용결을 알리는 표식을 지급 할 수 있다. ④사용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사용점 철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 또는 구두, 전화로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9조(거래대금 지급) 시장은 사용점에서 회수한 상품권의 대금청구금액을 확인한 후 수시로 지급하여야 한다.</p>	<p>제9조(거래대금 지급) 판매점은 _____ _____.</p>
<p>제10조(인센티브) 1. 매년 1회 우수판매점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 매년 1회 우수사용점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3. 개인이 삼척사랑상품권을 5만원 이상 구입시 삼척사랑상품권 경품권을 5만원당 1매씩 지급한다. 4. 매월 1회 20명 이내 예산의 범위 인원내에서 삼척사랑상품권 경품권 추첨행사를 실시하고 당첨자에게는 삼척사랑상품권 2만원 상당을 지급한다.</p> <p><신설></p>	<p>제10조(인센티브) 1. _____ 할 수 있다. 2. _____ 할 수 있다. 3.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점 및 법인 구매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상품권 판매점 또는 사용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삼척시 공고 제2016 - 761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8일

삼척시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등에 따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차례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위원의 연임제한을 삭제(안 제4조제4항)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안 제17조, 안 제20조제4항, 안 제28조제4항제5호, 안 제32조제1항, 안 제38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안 제3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6조의 2, 안 제33조제5항, 안 제63조제4항)
-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 연간 사용료·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안 제20조제4항, 안 제35조제3항, 안 제38조제1항 및 제3항~4항,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제2항, 안 제63조의2)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안 제40조제11호 및 제12호)
 -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기간 : 2016. 11. 08. ~ 11. 29.(21일간)
- 나.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 의견제출서식
- 라. 관련 법령문 발췌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우편번호 : 25914
- 담당부서 : 삼척시청 회계과
- 전 화 : 033-570-3275(재산관리담당자)
- 팩 스 : 033-570-3135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을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를 "및 영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초과 하여"를 "초과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미달하는"을 "못 미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운영에 철저를"을 "관리·운영을 철저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를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할 때"로, "경우를 제외하고"를 "경우 외에"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를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지"를 "포함되지"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때에는"

을 각각 "경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초래하거나 기부인 에게"를 "주거나 기부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 근"을 "인근"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1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고자 할 때"를 "하려는 경우"로, "명백히 하여야"를 "분명히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재산으로서의"를 "재산으로서"로,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7항"으로,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수탁자"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로, "전대(轉貸)"를 "다시 대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를 "관리수탁자는 사용·수익허"로, "전대(轉貸)하는"을 "다시 대여할"로,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를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입찰"을 "입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평가 등 기타"를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곳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결정자료 로서"를 "결정자료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합산하여 결정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만달러"를 "100만 달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달러"를 "2천만 달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를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를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가하여 증가"를 "증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예 하거나"를 "미루거나"로 한다.

제37조 중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

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 중 "연 4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로 한다.

제40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중 "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를 "신택할 경우"로 한다.

제42조 중 "이바지할수"를 "이바지할 수"로 한다.

제43조 중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를 "경우에만 처분하되 사전에 경제성 및"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를 "신중히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를 "표준설

계면적기준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을 "신축할"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정리한다"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6조제8호 중 "한지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8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관리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3조의2 중 "연리 4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상당액으로 한다"를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상당액으로 한다"를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누설하여"를 "누설해"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해당"을 "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조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67조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가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	④ ----- ----- 하며 ----- ----- -----

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4. (생략)

5.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 하여 증감된 경우

6. 7.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4. (생략)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

1. (현행과 같음)

2. ----- 및 영 제8조--

3. 4. (현행과 같음)

5. -----
----- 초과하여 -----

6. 7.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못
미치는 --

3. 4.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 7.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 관리·운영을 철저히 -----.

② -----

1. 2. (현행과 같음)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4. ~ 7. (현행과 같음)

③ -----

-----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생략)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재산을 관리할 때 -----
----- 경우 외에 -----
-----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포함되지 -----
----- 경우 -----

② -----
----- 경우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거나 기부자에게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 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별 제21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 근 -----

제17조(무상 사용기간) -----
- 영 제17조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하려는 경우 -----
----- 분명히 적어야 -----
② -----

- 1. (현행과 같음)
- 2. ----- 계

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②·③ (생략)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산으로서 -----
- 줄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

분명하게 적어야 --.

- 1. ~ 7.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4조제7항-----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경우에는 -----

② -----
---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
- 다시 대여하여 -----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삼척시(이하 "시"이라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분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③ ----- 관리수탁자는 사용·수익허 -----

----- 다시 대여할 -----
-----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

④ (현행과 같음)

⑤ 입찰-----

⑥ ----- 내구연수-----

제23조(일반재산 대부분의 준용) ① -----
-----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한다.

<신 설>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3항제8호 및 제29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

항하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급의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 -----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

1.·2.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4. (현행과 같음)

5. ----- 영 제29조제1

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6. ~ 8. (생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계공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세

항제13호-----

6. ~ 8.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시가적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곳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 결정자료로서 -----.

④ ----- 감정평가업자-----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 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 -----

가. ----- 100만 달러 -----

나. ----- 2천만 달러 -----

다. ~ 사. (현행과 같음)

2. -----

가. -----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 사.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⑥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생략)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가. -----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

나. ~ 사.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그 밖의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

지 및 농공단지과 같은 법 제 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 4.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계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

2.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 신탁할 경우 -----

· 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기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장래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도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

제42조(공유임야관리) ----- 이바지할 수 -----

제43조(처분의 제한) ----- 경우에만 처분하되 사전에 경제성 및 -- 신중히 검토하여야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표준설계면적기준으로 --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신축할 -----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비
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경우에는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
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
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
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
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
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
---- 경우
2. -----
--- 경우
3. -----

4.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
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1. ~ 7. (생 략)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1. ~ 7. (현행과 같음)
8. -----

한정한다)

----- 한정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
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

----- 등재·관리하여야 ---.

제63조(변상금등의 분할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등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
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
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의 범위에서 그 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
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
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
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리 4퍼센트로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는 경우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1. -----
-----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
-----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누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그 -----

----- 감정평가업자에게 -----

제67조(준용) -----

----- 사항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관계 법령문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① 행정재산은 대부·대차·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受益)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⑩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중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⑬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⑭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차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 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⑫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대가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대금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대수자가 대가대금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한꺼번에 대가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인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결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철거지면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복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81조(변상금)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 ① 사도법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 08. 03.)

제16조(수의매각)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차지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 ① 사도법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 08. 03.)

제16조(수의매각)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차지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삼척시 공고 제2016 - 762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8일

삼척시장

1. 개정이유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등에 따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조례에 적합하도록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 정비(안 제2조제2항)
-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안 제12조제1항, 안 제28조, 안 제30조)
-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기간 : 2016. 11. 08. ~ 11. 29.(21일간)
- 나.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다. 의견제출서식
- 라. 별지 제2호서식(수정안)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우편번호 : 25914
 - 담당부서 : 삼척시청 회계과
 - 전 화 : 033-570-3275(재산관리담당자)
 - 팩 스 : 033-570-3135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청·소”라”를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라”로, “청·소의”를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를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용도폐지”를 “용도폐지(변경)”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8조 중 “제1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을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로 한다.

제36조 중 “관계법령”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 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 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 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 례」상의 소속기관(이하 " <u>청 ·소</u>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u>청·소의</u>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 관과장)	2. ----- ----- - " <u>직속기관·사업소·읍·면 ·동</u> "이라 ----- <u>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의</u> ----- -----
3. 본청 및 <u>청·소</u> 에서 사용하 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 관과장	3. ----- <u>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u>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	제12조(기부채납) ① ----- ----- -----제5조제1

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② (생략)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할-----

- 1.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용도폐지(변경)

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정평가업자-----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제20조-----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략)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

- 1.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용규정) -----
 -----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
(제14조제2항 관련)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 리 상 태	연 고 자 유 무
	년 월 일	목 적	취 득 당 시 가 격			

- 3. 용도폐지(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입)
- 4. 용도폐지(변경) 후의 활용방안
- 5. 소유권증명
- 6. 위치도 및 지적도
- 7. 사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락처 : 033)570-3965